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65
----------	------------

제안년월일 : 2018년 6월 22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의회의 사무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가 단체장 고유의 조직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체계자구 정비, 민원행정상담관 위촉·운영 주체 명확화, 누락된 별지서식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에 관한 정의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 민원행정상담관의 위촉·운영 주체를 의장으로 명시함(안 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연 평균 107,500천원(비용추계서 참조)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5조 제1항 단서 중 “인정되는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받는 경우”를 “받는 경우에는”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행정”을 “의장은 행정”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서식]

민원 처리 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부서	처리기한	신청방법	민원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		비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처리일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4. <u>“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란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민원상담을 하는 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u> <p>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u>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u>필요한 경우</u>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u>받는 경우</u> 예산의 <u>범위 내에서</u>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u>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u> 해당분야에 지식</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원안과 같음)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5조(민원처리) ① ----- ----- ----- <u>인정되는 경우에는</u> ----- ----- ----- ----- -----.</p> <p>② ----- <u>필요한 경우에는</u> ----- ----- -----.</p> <p>③ ----- <u>받는 경우에는</u> ----- <u>범위에서</u> ----- -----.</p> <p>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u>의장은 행정</u> ----- -----</p>

원 안

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수정안

-----.

② (원안과 같음)

[별지서식]

민 원 처 리 부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 부서	처리 기한	신청 방법	민원 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		비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처리일	

297mm×210mm [백상지 80g/㎡]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진정, 건의, 질의, 탄원, 호소 등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행정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한다.

③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 ① 사무처장은 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회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처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 확인, 현장조사 또는 관계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이 처리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등 민원을 이송 받은 기관이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및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알려주어 의정활동에 참조·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토록 한 민원에 대하여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관별 업무보고 시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민원행정상담관) ① 의장은 행정 및 시민생활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행정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민원 처리 부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부서	처리기한	신청방법	민원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		비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용	처리일	